

맹견 소유자

안전관리 사항



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
않게 해야 합니다.



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,
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

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
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

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
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

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
합니다.

※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2024년 4월부터

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



2024. 4. 27.

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

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은 **동물등록**,
책임보험 가입, **중성화 수술**을 완료한 후
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
기질평가를 거쳐 경기도에서 맹견사육을
허가받는 제도입니다.

대상

맹견(5종*),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도지사가
맹견으로 지정한 개

* 핏불테리어(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)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
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도사견,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



아메리칸
핏불테리어

아메리칸
스태퍼드셔 테리어

스태퍼드셔 불
테리어

도사

로트와일러



평가/ 조치

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,
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기존에 맹견(5종)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('24. 4. 27.)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.
(「동물보호법」 제25조)

